

예 산 총 칙

제 1 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 계	223,672,577	6,710,177
일반 회 계	191,274,051	5,738,222
특별 회 계	32,398,526	971,955
공 기 업 특별 회 계	29,029,720	870,892
상 수 도 공 기 업 특별 회 계	10,233,326	307,000
하 수 도 공 기 업 특별 회 계	18,796,394	563,892
기 타 특별 회 계	3,368,806	101,063
주 택 사 업 특별 회 계	351,286	10,538
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특별 회 계	717,709	21,531
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 회 계	102,694	3,081
주 민 소 득 사 업 특별 회 계	269,150	8,075
공 영 개 발 사 업 특별 회 계	353,514	10,605
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특별 회 계	341,559	10,247
기 반 시 설 특별 회 계	35,000	1,050
장 기 미 집 행 특별 회 계	400,000	12,000
수 질 개 선 특별 회 계	797,894	23,936

제 2 조 :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: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: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120,248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: 기금 수입·지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기금운용계획"과 같다.

○ 인건비, 복리후생비, 반환금기타, 지방채상환 원리금.

제 6 조 :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.